여비세칙

정 2005. 11. 23 제 개 정(1) 2006. 9. 12 / 개 2007. 7. 1 정(2) 개 정(3) 2007. 8. 10 / 개 정(4) 2008. 6. 26 2010. 7. 1 개 정(5) 2009. 1. 5 / 개 정(6) 2012. 1. 13 개 정(7) 2010. 11. 19 / 개 정(8) 개 정(9) 2013. 1. 14 / 개 정(10) 2014. 5. 16 개 정(11) 2014. 8. 12 / 개 정(12) 2014. 11. 3 2015. 1. 16 개 정(13) 2014. 11. 28 / 개 정(14) 정(15) 2015. 5. 21 / 개 정(16) 2015. 12. 11 개 정(18) 개 정(17) 2016. 3. 7 / 개 2016. 7. 12 정(19) 2017. 3. 14 / 개 개 정(20) 2018. 4. 17 정(21) 2018. 10. 24 / 개 정(22) 2019. 2. 28 개 정(23) 2019. 10. 30 / 개 개 정(24) 2020. 9. 29 개 정(25) 2021. 1. 8 / 개 정(26) 2021. 5. 27 개 정(27) 2024. 1. 8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① 이 세칙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 임원과 직원(이하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로 국내외 출장과 국외연수(90일 이하의 단기연수)를 시행할 때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해외주재원과 현지채용 직원의 출장 · 연수도 이 세칙을 따른다.
 - ③ 해외주재원의 파견 및 복귀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는 「해외주재원 관리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이 출장을 갈 경우 운영위원은 이 세 칙상 사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⑤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 (정의) ① "직원"은 「인사세칙」상 직원을 말한다.
 - ② "주관부서"는 출장 및 연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③ "출장일수"는 여행일수를 말하며, 국외출장·연수의 경우 해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항만, 공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공항 출발일부터 도착일까지로 한다.
 - ④ "국내출장"은 근무지역(본사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범위 외 출장을 말한다.

- 제3조(법규준수) 임직원은 국외출장 및 연수시 공사의 내부통제기준 등 국내 법규 뿐만 아니라, 출장·연수중인 국가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여비) ①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 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 제5조(계산기준)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 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지 경과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한다.
- 제6조(여비의 지급) ① 여비는 이 세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며, 원화 또 는 외화로 선급할 수 있다.
 - ② 출장・연수중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발령일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다.
 - ③ 출장·연수중 여비의 정액이 변경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 ④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이 아닌 자가 출장을 갈 경우 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우에 상당한 직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수행하거나 동행 출장하는 직원에게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동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이 국내외 주요 회의에 우리나라 또는 공사를 대표하여 참석할 시, 배우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과 동등한 여비를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⑦ 임직원이 근무 또는 공무여행 중 사망, 질병, 기타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후 수습 또는 영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기타의 자에게 본인과 동등의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여비의 결제) ① 출장자는 여비 결제시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8조(국내출장 신청) ① 부서원은 부서장, 부서장은 소속 부문장, 지사장·본부장· 부문장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9조(국내여비의 지급) ① 임직원이 국내를 출장할 때에는 출장일수에 따라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한다.
 - ② 교통비는 항공, 기차, 차량, 선박 등의 요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공사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식비의 경우 실비(1식당 3만원 한도) 지급한다.
 - ④ 숙박비는 숙박한 일수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기준금액과 한도금액은 [별표 제2호]의 숙박비에 따라 [별표 제3호]의 급지를 적용한다.
 - ⑤ 국내출장의 여비지급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시스템으로 청구한다.
 - ⑥ 근무지역 내에서 업무로 인해 교통비를 사용하는 경우 실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국내 교통비) ① 국내 항공운임은 사장 및 임원은 비즈니스석, 직원은 이 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② 기차운임은 사장 및 임원은 특실, 직원은 일반실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③ 공무 형편상 부득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류비 및 통행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외국 근무 직원의 여비) ① 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재국내 출장여비는 교통비 및 식비(1식당 \$ 30 한도)를 실비로 지급한다. 단, 숙박을 요하는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별표 제2호]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재국외 출장여비는 국외여비에 따라 지급한다.

제3장 국외여비

- 제12조(국외출장·연수 신청) ① 출장·연수 계획수립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방문도시는 일정 전일 오전중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 원칙은 동일국가내 출장시 항공기 탑승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20시간을 초과하는 편도출장의 경우 직원의 건강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중간 경유지 또는 출장지에서 1일을 쉴 수 있다.
 - ③ 근무지로 귀국시 공항 도착시간은 심야시간대(오후11시~오전6시)는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심의 및 승인) ① 국외출장 및 연수는 부서원은 소속부서장, 부서장은 소속부문장, 지사장·본부장·부문장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② 승인자는 [별표 제1호]의 「국외출장 및 연수 심사기준」에 따라 출장연수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 ③ 국외연수 신청은 주관부서장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필요시 사전심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사전심사회의) ① 사전심사회의는 주관부서장, 준법지원 담당부서장, 감사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출장·연수 신청자의 소속부서장은 동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사전심사회의의 구성원중 심사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사전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연간 국외출장 및 연수 계획중 외부지원을 받는 건. 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 위원 1인을 위촉하다.
 - 2. 제1호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지원 건으로 본 세칙에서 정한 바와 다른 경우
 - 3. 숙박비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4. 그 밖에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5조(국외출장·연수의 변경) ① 신청자는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사유와 공사가 부담하는 발생비용,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품의하며,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외연수의 변경시에는 주관부서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국외출장·연수의 변경에 따른 발생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가 부담한다.
 - 1.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 2.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출장·연수 신청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6조(교통비) ① 교통비는 항공, 기차, 차량, 선박 등 이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별표 제2호]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1급 직원이 8시간 이상, 2급이하 직원이 20시간 이상 편도로 장거리 비행탑 승을 하거나, 건강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즈니스석 항 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방문국가내에서 장거리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출장자는 사전 승인을 받고 차량을 대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차량 대여비, 유류비, 주차비 등을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사전승인 없이 현지사정 등에 의해 부득이 차량을 대여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고, 선급받은 일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7조(항공 마일리지) ① 임직원은 공무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가 가

능한 경우 이를 우선 사용한다.

- ② 임직원은 좌석의 승급, 공항 라운지 이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공무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의 관리는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 ④ 임직원은 공무상 적립 또는 사용한 마일리지 내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숙박비) ① 숙박비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숙박급지별로 기준금액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숙박급지는 [별표 제3호]에 따른다.
 - ② 숙박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국외출장·연수 신청서에 기재하고,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다만, 현지실사를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숙박비 기준금액을 한도금액으로 계산하다.
 - ③ 공사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국제회의 등의 숙박비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별표 제3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출장지에서 [별표 제3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⑤ [별표 제2호]의 기준금액 또는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숙박비의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자비로 부담할 수 있다.
- 제19조(식비) ①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별표 제2호]과 같이 1일당 정액으로 지급한다.
 - ② 출장・연수기간 중 외부기관으로부터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나 식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식당 식비의 1/3을 공제한다.
- 제20조(일비) 일비는 시내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며, 출장일수에 따라 [별표 제2호] 과 같이 1일당 정액으로 지급한다.
- 제21조(통신비)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등 출장시 업무상 발생하는 통신비는 출장 일수에 따라 1일당 25불을 지급한다.
- 제22조(기타 제비용) 공사는 국외출장·연수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1. 여권 및 입국사증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입국세
 - 2.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한 예방주사 비용, 보험금 1억원 상당의 해외여행 보험료 등

- 제23조(외부지원) ① 국외출장·연수시 외부기관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항공운임과 숙박비에 관한 외부지원은 본 세칙 제16조와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 직접투자회사 이사(위임 받은 자 포함)로서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 2. 발표자 또는 토론자 등으로서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 3.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 ③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자문회의(LPAC), 투자자 연례총회(AGM) 등에 공사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18조만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외부지원 금액이 본 세칙에 따른 여비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사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여비의 정산) ① 출장·연수의 종료후 여비의 정산은 공사의 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출장·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항공, 기차, 차량, 선박 등 교통비 영수증
 - 2. 숙박비 영수증
 - 3. 항공 마일리지 내역.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항공권으로 대체한다.
 - 4. 기타 제비용 영수증
 - ② 개인 신용카드로 여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내역이 포함된 카드 명세서와 청구서(Invoice)를 제출한다.
 - ③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본조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여비환급은 공사의 법인계좌를 통해야 한다.
- 제25조(출장·연수 결과보고) ① 출장·연수 종료후 출장·연수자는 3주 이내에 주관부서에 [별표 제5호]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는 부서원의 경우 소속부서장, 부서장·본부장은 소속부문장, 1급 직원 및 임원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해외지사 직원은 소속지사장, 지사장은 소속부문장의 승인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본사를 방문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제1항의 결과보고서 제출시 출장·연수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도 함께 제출한다. 다만, 투자실사, 입찰계약, 감사, 인사관리 등 자료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⑤ 2인 이상의 직원이 동행한 경우 1개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장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3)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 폐지) 본 세칙의 개정으로 「국외출장・연수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부임여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본 세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임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외주재원 관리세칙」이 개정될 때까지 이전 세칙을 따른다.

부 칙(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국외출장 및 연수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필요성	 표방하는 출장・연수목적과 실질과의 부합 여부 ※ 시찰・견학・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낮은 단순시찰 및 단순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연수는 제한 출장・연수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일정 적합성	 출장・연수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연수)기관으로 제한 출장・연수일정의 구체성 (시간대별 일정수립 여부 등) 전체일정 중 업무와 관련된 일정의 비중 공휴일을 포함한 경우 그 필요성 출장・연수시기의 적정성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의 고려 여부) 출장・연수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였는지 여부
참여자 적합성	 직무 관련자만 참여하였는지 (출장·연수자의 현 담당업무) 참여자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 부여) 귀국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사람인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인지 출장·연수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에 한정하였는지 여부
비용 적합성	 여비세칙에 의하여 산출 지급되는 것인지 예산에 반영된 사항인지 여부 용역기관・산하기관 등과의 출장・연수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숙박비 등의 과다 여부 ※ 자비에 의한 출장・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인정

[별표 제2호]

국외여비

1. 교통비 : 실비로 지급하며, 직위에 따라 좌석 등급기준을 달리한다.

구분	사장	임원	직원
항공	비즈니스석	비지니스석	이코노미석
기차	상위 등급	차상위 등급	일반등급

2. 숙박비 : 실비로 지급하며, 직위와 숙박급지에 따라 기준금액과 한도금액을 달리한다.

コ.日	사장		임	원	직원		
구분	기준금액	한도금액	기준금액	한도금액	기준금액	한도금액	
최상급지	\$ 389 \$ 583		\$ 282	\$ 423	\$ 250	\$ 330	
상급지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frac{1}{2} \Rightarrow\$ \$\		\$ 310	\$ 180	\$ 220		
중급지	\$ 215	\$ 322	\$ 162	\$ 243	\$ 140	\$ 160	

※ 기준금액과 한도금액은 숙박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3. 식비 : 1일당 정액으로 지급하며, 직위와 숙박급지에 따라 달리한다.

구분	사장	임원	직원
최상급지	\$ 150	\$ 120	\$ 90
상급지	\$ 120	\$ 90	\$ 60
중급지	\$ 90	\$ 60	\$ 30

4. 일비 : 1일당 정액으로 지급하며, 직위에 따라 달리한다.

사장	임원	직원
\$ 50	\$ 45	\$ 40

숙박급지

구분	최상급지	상급지	중급지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바쿠 (일본) 도쿄 (중국) 홍콩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터키) 이스탄불 (호주) 다윈, 멜버른, 시드니 (인도) 뭄바이, 뉴델리 	아제르바이잔 일본, 중국, 대만 스리랑카,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코트디부아르 터키, 호주, 레바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한국) 서울, 부산, 제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피지 한국
남·북 아메리카주	(미국) 뉴욕, 보스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지역 포함), LA(Greater LA지역포함), 시카고 (브라질) 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루 (캐나다) 캘거리, 퀘벡, 토론토 (콜롬비아) 보고타 (칠레) 산티아고	 미국, 브라질 캐나다 페루 케이만제도 콜롬비아 칠레 	
유럽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헤이그 (노르웨이) 오슬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벨기에) 브뤼쉘 (스위스) 제네바, 취리히, 추크 (스페인) 마드리드 (스웨덴) 스톡홀름 (아일랜드) 더블린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 (영국) 런던, 버뮤다 (프랑스) 파리, 니스	• 그리스, 네덜란드 • 노르웨이, 덴마크 • 독일, 러시아, • 룩셈부르크, 벨기에 • 세르비아, 스위스 • 스페인, 스웨덴 • 아일랜드, 이탈리아 • 영국, 프랑스 • 오스트리아 • 포르투갈, 폴란드 • 핀란드	
중동, 아프리카주	(나이지리아) 라고스 (레바논) 베이루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오만) 무스카트 (코트디부아르) 아비잔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모로코, 모리셔스 이란, 카타르 아랍 에미레이트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별표 제4호]

<u>국외출장 · 연수 상세일정</u>

구분	일시	장소	방문 기관	접촉예정 인물	업무수행/연수내용	법인카드 사용여부
1						
2						
3						
4						
5						
6						

※ 작성시 유의사항

- o 출국 및 귀국일정을 포함하여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2인 이상 참석하고, 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출장자별로 작성
- 법인카드 사용계획 여부를 O / X로 작성

[별표 제5호]

국외출장·연수 결과보고서

출장·연수자	(소속)		(2	직급)		(성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박	일)
출장·연수명									
출장·연수기관					장 소				
출장·연수내용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역	면수시 획	득한 자료!	도 함께	제출)	
업무활용계획									
지식정보란 (※	부득이한 사유	로 출장·역	연수시 획	득한 자	료를 미저	출할 시 경	작성)		
- 자료명 :									
- 자료 미제출	사유 :								
- 관련자료 보	.관처 :								